아시아·태평양經濟協力(APEC)의 WTO規範性

崔哲榮*

차 례

- I. 地域經濟機構의 GATT規範
- Ⅱ. APEC의 發展
 - 1. APEC의 構造와 運營體系
 - 2. 시애틀會談의 成果
 - 3. 시애틀 頂上會談
- Ⅲ. APEC의 貿易促進과 經濟活性化
 - 1. 보고르會議의 結果
 - 2. 오사카會議
 - 3. APEC 마닐라 實行計劃(MAPA)
- IV. WTO體制內에서 APEC의 地位
 - 1. APEC의 GATT規範 一致性
 - 2. WTO와 APEC의 貿易自由化
 - 3. WTO를 위한 提言
- V. APEC의 向後展望

^{*} 韓國法制研究院 先任研究員, 法學博士

I. 地域經濟機構와 GATT規範

世界貿易機構(WTO)는 지역적인 무역협정들을 기본적으로 1947년 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47)의 제24조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비록 그 내용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제24조에 따르면 관세동맹(Customs Union: CU) 또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TA)는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내에서 자유무역을 달성한 경우에 회원국에 의하여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다른 장벽이 이전에 역내에서 이행되는 것보다 나빠지지 않아야 하며1)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 인정되는 경우 GATT 1947의 제1조에 따른 最惠國待遇(MFN)원칙을 이유로 비회원국들에게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달성으로 얻은 결과적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2) GATT 제24조의 한계와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地域經濟統合機構의 개념하에서 본다면 1980년대에 이루어진 지역적 통합작업들은 관세장벽의 제거라는 기본적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3)

그러나 북미자유무역지대협정(NAFTA)과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협정은 지역적 관세장벽의 제거라는 범위를 넘어서 당해 지역내에서 무역편의조치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非關稅貿易政策은 입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국내적 규제를 재조정하여 국제교역에 있어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국가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합의로서 貿易便宜措置, 그리고 특정 국가또는 지역내에서의 교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민간부분을 포함하는 각료 또는 그 이하 차원에 의한 정부의 비공식적인 행위로서 貿易促進措置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經濟協力(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은 국제적인 기구의 새로운 사례로서 이와 함께 발생하는 다변적 통합의 문제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 10년에 이르는 APEC의 역사를 통하여 APEC은 잠재적인 역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貿易便宜 및經濟活性化聯合(Trade Facilitation and Business Promotion Association:

¹⁾ GATT 1947 제24조제5항 (a), (b);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뿐 아니라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체제도 포함된다.

²⁾ GATT 1947 제24조제1항.

³⁾ 북미자유무역지대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하 TFBPA라 한다)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무역지대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APEC은 내부관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신에 무역편의 및 촉진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APEC이 무역자유화로부터 멀어짐으로써 GATT 제24조와의 관련성은 줄어들었지만 APEC의 회원국들의 경제는 여전히 GATT의 다른 규정 특히 제1조의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범위에 남아 있다.

多者間 貿易體制가 종국적으로 TFBPA를 더욱 촉진시키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첫째, 정해진 협상테이블에서 협상당사자들의 숫자가 소규모이며 둘째, 진보적이며 조화된 국내정책의 일방적 적용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세째, 일반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무역을 단계적으로 증가(ratcheting up)시킨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적 경제기구인 APEC을 WTO는 어떻게 대우하여야 할 것인가, APEC의 합의사항이 GATT규범에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WTO와 APEC이 GATT규범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기업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단기적인 貿易轉換效果의 可能性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관한 방안을 고찰한다.

Ⅱ. APEC의 發展

1. APEC의 構造와 運營體系

1989년 호주의 제안에 따라 미국, 일본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4)

⁴⁾ ASEAN 국가들은 1992년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상품의 경쟁력강화 와 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등 회원 6개국을 단일시장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인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1995년 베트남을 7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오는 2008년까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광공업제품과 원산지비율 40%이상인 농산물가공품의 관세를 0~5%로 인하하는 것이다. 특히 섬유, 전기전자, 화학, 고무제품 등 15개 품목은 2003년까지 관세를 인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관세인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의 역내개방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외국인 직접투자환경개선 등 AFTA를 보완·촉진하기 위한 소위 AFTA-Plus를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2000년까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을 회원국으로 추가 영입하여 "하나의 동남아시아(One Southeast Asia)"를 형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元容杰,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의 展開過程과 그示唆點,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6, 11~12면.

APEC의 設立을 위해 호주의 캔베라에서 소집된 각료회의에 다른 태평양연안 지역의 국가들을 초청하여 회합하였다. 非公式的 諮問포럼으로 의도된 APEC의 최초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둘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무역, 투자 그리고 다른 공동의경제적 이익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들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써 APEC 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장관들이 참석하고 APEC 회원국들이 윤번제로 의장이 되는 연례각료회의를 설치하였다. 초기 형성기에 APEC은 지역적 무역지대와 유사성이 거의 없었으며 '開放的 地域主義'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APEC은 단지 비구속적 토론의 장으로 출발한 것이다.6)이는 기본적으로 관세지향의 무역블럭을 모방하는 APEC의 전개에 대한 가장 큰 내부적 비판자인 말레지아 수상 마하티르의 주장때문이었다.7)

2. 시애틀會談의 成果

APEC의 성격과 범위는 1993년 회의의 의장국인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APEC회원국의 국가원수들을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에 초청함으로써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⁸⁾ 이때까지 APEC회원국간의 회의는 각료급에서만 이루어져 왔었다.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활용하여 미국은 단번에 APEC을 地域的 貿易自由化地帶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회합으로 APEC은 수직적 및 수평적 확대를 달성하였다. 垂直的으로 위로는 APEC회원국 원수들로부터 밑으로는 각종 회합과 프로그램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정부관료들까지 APEC에 참여하게 되고 의사 결정권을 확대하게 되었다. 水平的으로 APEC은 非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⁵⁾ 개방적 지역주의란 어떤 지역적 실체가 다른 비회원국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관세의 인하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Andrew A. Faye, APEC and The New Regionalism: GATT Compliance and Prescriptions for the WTO, Law &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28, 1996, p.177.

⁶⁾ Harold Dichter, Legal Implications of an Asia-Pacific Economic Grouping, 16 U. PA. J. Int'l Bus. L. 99, 1995, p.126.

⁷⁾ 이러한 마하티르의 주장은 만약 미국이 아시아의 經濟的 地域主義에 참여하게 되면 아시아지역주의는 미국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마하티르는 아시아국가들은 아시아국가들만의 협력을 추구하여야 하며 하나의 실체로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eiya Toyonga, Commentary, Ernest H. Preeg, Trade Policy Ahead, 1995, p.59.

⁸⁾ Andrew A. Faye, op. cit., p.179.

독립적 업무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기구를 확대하였고⁹⁾ 현자그룹의 도입과 환태평양지역이 세계무역을 다자간의 무역체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비젼의 제시를 통해 이론적 측면 또한 확대되었다.

(1) 賢者그룹(Eminent Persons Group)의10) 報告

1993년 10월 현자그룹은 1996년까지의 진정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를 요구하는 'APEC을 위한 비젼(A Vision for APEC)'이라는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현자그룹은 자신들의 제안을 貿易自由化, 貿易促進, 技術的協力, 그리고 制度化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무역자유화를 위해서첫째, APEC은 최우선적으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달성하여야 하며 둘째,이와 병행하여 APEC은 GATT 규범의 준수를 기초로하여 지역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의 광범위하고 基本的인 勸告를 하였다.11) 첫 번째의 권고는 APEC 국가들에게 당시 문제되어 있던 우루과이라운드의 체결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소위 '새로운 貿易議題'라고 불리우는 추가적 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지역적 무역블럭에 관한 원칙을 강화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며, 두 번째 권고는 지역적 무역자유화가 다자간체제를 '강화하고',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지역주의의 허용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무역논의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를 뒤쳐지지 않고 세계무역협상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2) APEC의 跳躍

1993년의 시애틀각료회담은 미국이 주재하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상이한 地域主義 및 多者主義 概念들을 아시아·태평양국가들에게 동시적인 목표로써 제시하였다. 1993년의 각료회의에서는 첫째, 현자그룹에게 그들이 제안한 비젼 의 달성에 필요한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새로운 임무가 부과되었고 둘째,

⁹⁾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아가 1993년 각료회담에 초청되었고 칠레의 1994년 가입이 허용되었다.

¹⁰⁾ 회원국에 의하여 지명된 높은 경륜을 갖춘 국제경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자그룹은 APEC성장의 활력소가 되었다. 현자그룹은 각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APEC의 발전과 향후 비젼에 관한 충고와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APEC회원국들에게 전달하였다. 현자그룹은 1993년 설립되었다.

¹¹⁾ Andrew A. Faye, APEC and The New Regionalism : GATT Compliance and Prescriptions for the WTO, Law &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28, 1996. pp.180~181 note 34. 참조.

APEC 무역투자규범(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이 선언되었으며 세째, APEC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CTI) 가 설립되었다.

무역투자규범의 선언은 현자그룹의 일반제안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례이며 開放的 地域主義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언급을 통해 지지하였다. 이 선언은 비록 무역장벽의 감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호한 용어로 언급하고 있지만 GATT의 원칙과 일치하며 다른 경제체제에 대해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각료회의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3. 시애틀 頂上會談

APEC회원국의 元首들은 경제장관의 회합을 요구하였으며, APEC 교육프로그램과 기업지원프로그램(Business Volunteer Program)을 창설하였고 태평양기업포럼(Pacific Business Forum)을 설치하였다. 각국의 원수들은 태평양기업포럼을 통해 APEC이 지역적 무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해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기업간의 협력에 있어 가일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확립된 조직과 정체성을 가지고 APEC은 1994년 비젼의 실현이라는 다음 목표를 세웠다. 각국의 원수와 장관들은 현자그룹, 태평양기업포럼 그리고 무역및투자위원회에 開放的 地域主義의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1993년이 지나면서 미국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도 종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APEC의 방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미국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1994년 인도네시아가 APEC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맡게되자 APEC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12)

Ⅲ. APEC의 貿易促進과 經濟活性化

APEC은 관세동맹(CU)인가 아니면 자유무역지대(FTA)인가 아니면 새로

¹²⁾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40년전에 시작된 非同盟運動의 중심국가였기에 미국과의 관계가 어색하였으며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자유무역을 추진해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운 무엇인가하는 正體性의 문제가 1994~5년의 2년동안 논의되었다. APEC의 발전을 살펴보면 APEC은 상대적으로 制度的(institutions)이라기 보다節次的인(process) 것이었다. 2년 동안 몇몇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제안하였지만 궁극적으로 APEC은 일방적인 무역자유화, 진지한 무역촉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둔 새로운 地域協力의 형태로서 무역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協議體의 모습으로 굳어갔다.

1. 보고르會議의 結果

(1) 1994년 報告書

1994년의 각료회담이 있기전에 현자그룹의 보고서 'APEC 비젼의 달성 (Achieving the APEC Vision)'과 태평양경제포럼의 보고서 'APEC을 위한 경제청사진(A Business Blueprint for APEC)'이 발간되었다. 이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APEC의 가능한 세 가지의 모델로서 自由化에 초점을 둔 것, 交易促進에 초점을 둔 것, 經濟活性化에 초점을 둔 것 등을 제시하였다.¹³⁾

1) 貿易自由化

현자그룹은 무역자유화와 관세인하에 있어서 APE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현자그룹의 보고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지침에 근거하여 APEC의 관세인 하에 관한 그들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하에서 APEC은 관세 동맹이나 무역자유지대가 아닌 관심있는 非會員國과 全 GATT 會員國에 대하 여 상호적으로 또는 다자적으로 가입을 제의하는 개발과 이해의 협약을 설립 하고 있는 지역단체라고 할 수 있다.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정확한 변수는 좀더 많은 논의의 대상이었다. 'APEC 비젼의 달성'은 가능한 최대한의 一方的 貿易自由化, APEC 이 最惠國待遇(MFN)의 기초위에서 내부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하는 한편으로 비회원국들에 대한 APEC의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것에 대한 약속, 相互的 互惠主義의 기초위에서 비회원국들에 대해 APEC의 지역적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自發的 意志, APEC의 개별회원국이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의 기초위에서 비회원국들에게 APEC의 貿易自由化를 일방적으로 확대하

¹³⁾ Andrew A. Faye, op. cit., p.184.

는 것에 대한 承認 등의 요건으로 구성되는 非相互的이며 排他的인 '4자형식 (four-part formula)'을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위해 제시하였다.

현자그룹의 보고서는 상기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을 통해서 APEC의 개별 회원국들이 APEC 설립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APEC의 비회원국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무역자유화의 이념을 제시하였다.14)

2) 貿易促進

무역촉진조치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일방적인 立法的, 行政的 決定이다. 태평양경제포럼과 현자그룹은 각기의 보고서에서 국내제조물기준의 조화, 국제적으로 수용가능한 지적재산권보호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의 철거, 아시아·태평양투자규범의 준수, 설득력있는 통화 및 거시경제정책의 채택 등 다양한 무역촉진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조치 중에서 투자규범은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APEC이 무역자유화를 논의하기 위한 강력한 토론장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3) 經濟活性化

태평양경제포럼의 보고서 'APEC을 위한 경제청사진'은 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촉진, 경제개발정책,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분류된다. 비록 동 보고서가 무역촉진과 경제활성화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하고 있지만 역시 경제활성화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변수들 가운데서 동 보고서는 APEC에 대하여 투명성, 국경장벽, 기술이전, 기업윤리, (중소기업에 중심을 둔) 교육 및 문화의교류, 사회간접자본의 개발, 정부와 기업간 그리고 기업과 기업간의 네트워크등을 언급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결론으로 현자그룹에 의해 주장되는 무역자유화와 촉진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다시 밝히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인력자원및 경제개발의 필요성,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관계강화의 방법 또한 신속하게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5)

¹⁴⁾ David K. Linnan, APEC *Quo Vadis*?, *Am. J. Int'l L.*, Vol. 89, 1995, pp.824~829.

¹⁵⁾ Andrew A. Faye, op. cit., p.187.

(2) 非拘束的 投資原則

보고르 각료회의는 어떻게 APEC이 지역내의 경제활성화와 무역촉진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한 예를 제공하였다.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구체적인 APEC 非拘束的 投資規範을 채택한 것이다.16) 규범의 채택과정에서 미국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간의 논쟁은 이 규범을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입장은 '현재 충족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해야 하는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구속적인 규범을 갖게 된다면 이는 높은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최후까지 당해 규범의 강력한 구속력을 주장하였지만 미국은 끝내 주요 규정에 있어 拘束力의 弱化를 받아들이고 양보하였다.17) 비구속적 규범에 관한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경험한 난관은 무역자유화조치의 수용을 달성함에 있어 존재하는 잠재적 장애물들을 노정하는 것이었다.18)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견해들은 APEC이 域內貿易自由化地域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어렵게하는 것이다.

(3) 貿易自由化의 試圖

시애틀 정상회담이 APEC의 장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였고 보고르 각료회의가 무역촉진과 경제활성화를 강조하였지만 APEC은 여전히 무역자유화의목표를 향한 구체적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 보고르 정상회담의 선언문은이러한 공백상태를 메우는 것이었다. 비록 보고르 선언의 약속들은 비구속적인 것이었지만 각국의 정상들은 '2020년 이전에 아시아·태평양地域에 있어서 자유로우며 개방된 무역과 투자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약속'을 共同의 目標로 표명하였다.

¹⁶⁾ 비구속적 투자규범은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회원국의 투자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한 일종의 선언적 원칙이다.;金尚謙, APEC 非拘束的 投資原則의拘束化轉換에 대비한 主要 投資制度의 檢討,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7~18면.

¹⁷⁾ U.S. Backed Down in APEC Investment Code Dispute, 11 Int'l Trade Rep.(BNA) 1803, 1804, Nov. 23, 1994.

¹⁸⁾ 투자규범과 관련한 대립에서 원칙적으로 패배한 후에도 미국은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각료회의의 폐막연설에서 미국의 대표는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는 첫걸음이다.'라고 하였다.;이에 비해 중국과 말레지아는 투자규범이 구속적 약정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느슨한 협의체 포럼으로써 APEC의 기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의 차이를 드러냈다.; Andrew A. Fave, op. cit., pp.189~190.

보고르 선언은 다양한 경제발전의 단계에 놓여져 있는 각국에게 적용될 자유무역의 이상을 수용하기 위한 일련의 타협을 의미한다. 선언의 두 가지 주요 규정속에서 이러한 타협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구별을 분명히하고 역내 先進國들은 2010년까지 관세율을 0퍼센트까지내리도록 하면서 역내 開途國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정하고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에게 어느 때라도 관세의 인하를 정지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自發的 脫退條項(opt-out provision)이다.19)

이러한 구분의 목적은 APEC회원국간의 경제적 개발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르 선언에 대한 여전한 강력한 비난의 하나는 APEC의회원국들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어느 곳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0년과 2020년 규정은 두 가지의 타협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APEC의 선진국과 개도국은 두 그룹간에 상이한 목표연도를 설정함으로써 관세인하에 관하여 타협하였다. 두 번째, 미국과 같이 두 그룹중 어느 한 그룹에 명백히 속하는 APEC회원국들과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일부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이 아닌 중국과 같이 어느 한 그룹에 명백히 속하지 않는 국가는 보고르 선언에서 이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회원국들에 대한 분류의 필요성을 피할 수 있었다.20)

이 규정에 있어 또 다른 타협은 자유무역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의 경우 15년, 개도국의 경우 20년이라는 모든 APEC 회원국에게 허용된 긴 기간이다. 현자그룹과 태평양경제포럼은 좀더 단기간을 촉구하였지만 무역자유지역으로의 발전을 선호하는 APEC회원국들은 목표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을 설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는 APEC회원국들을 달래야만 했다.²¹⁾

보고르 선언문의 제9조는 自由脫退條項으로 간주되어 왔다. 동 조항은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協力協定을 제안하고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APEC회원국들은 이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 훗날 가

¹⁹⁾ Andrew A. Faye, op. cit., p.190.

²⁰⁾ 비록 선언문 자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어느 회원국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는 뜨겁게 논의된 주제였다. 그 주된 의사의 불일치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대만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And Now What ? APEC Leaders Get a Good Start, *ASIA-WEEK*, Nov. 23, 1994, pp.24~29. 참조.

²¹⁾ 긴 기간의 설정은 자유무역에 대하여 부정적인 회원국들을 달랬을 뿐만 아니라 21세 기까지 정권을 유지할 것 같지 않은 지도자들을 편하게 해주었다.; Andrew A. Faye, *op. cit.*, p.191.

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으로 협력협정의 제안과 이행을 진행시켜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APEC국가들은 어느 당사국이라도 아무런 책임없이 관세인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결국 이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 효과를 갖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비록 자유탈퇴조항이 APEC의 진전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회원국에 의해서 비구속적 선언에 自由脫退文句가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22)

사실 자유무역지대에 관하여 보고르 선언은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남겨 놓았다. 첫째,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APEC은 GATT 제24조가 함축하고 있는 형태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보고르 선언에 서명한 후에도 각국의 원수들은 자신들의 무역자유화가 세계 모든 국가에게 無條件的으로 擴大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相互主義的 立場을 취하는 비회원국가들에게만 확대될 것인가에 관하여 합의에이르지 못했다. 둘째, 어떠한 협상절차를 통해서 자유화가 달성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이는 APEC이 세계적인 最惠國待遇地位의 효과를 APEC이라는 완충장치를 통해서 방어하려고 시도하는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간에 쌍무적인 협상을 지속하고자 하는 거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다.

2. 오사카會議

1995년 11월 APEC회원국 원수들은 오사카에서 회합하였다. 시애틀 비젼선언과 보고르 선언이 비젼의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오사카 선언과 행동지침(Action Agenda)은 政治的 現實主義에 의하여 이끌어진 것이다. 오사카 행동지침은 실무자차원의 협상에 대하여 협상과정에서의 원칙뿐만 아니라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명백한 지침을 주려고 하였다. 행동지침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무역과 투자의 촉진 그리고 경제 및 기술협력이라는 APEC회원국간의 공동의 목표를 향한 APEC의 기능을 제시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속도가 빨라진 一方的 關稅引下를 위한 통로로서 APEC

²²⁾ 다른 회원국이 비구속적인 선언에 진심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는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회원국들 또한 APEC지역내에서 關稅를 撤廢하기 위한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의 역할은 오사카회의에 의하여 강화되었으며 다시 한번 무역촉진과 경제활성 화에 논의의 중심이 맞추어졌다.

(1) 地域的 貿易自由化措置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GATT 1947의 제24조 사이의 잠재적 충돌은 1995년 자유무역지대로 APEC을 전환시키려는 일부 회원국들의 제안이 거부됨으로써 회피될 수 있었다. 오사카선언은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부터 交易의轉換을 가져오게 될 내부지향적인 무역블럭에 대하여 확고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회의의 참석자들은 APEC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APEC외부의 국가나 지역경제협력체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합의하였다.23) 국제적인 자유무역지대로서 APEC의 형성은 다음의 두가지 요소에 의해 방해되었다.

첫째, 1993년 시애틀 회의와 1995년 오사카 회의 사이에 마무리된 우루과 이라운드협상은 다자간의 차원에 있어 중요한 성취였다. APEC과 같은 地域的 機構의 성공이라는 요소는 WTO와 같은 普遍的 機構의 가동에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위협요소가 GATT의 체약당사국들로 하여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수 있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따른 GATT 1994協定의 비준과WTO의 존재가 APEC회원국들에게 자유무역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켰거나최소한 감소시키는 후방효과를 보이고 있음은 분명하다.24

둘째, APEC 내부의 정치적인 현실때문이었다.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추진 되어야 할 관세인하의 형태에 관한 표면적인 의견불일치는 결국 APEC의 전체적인 틀에 관한 깊숙한 意見의 不一致로 다루어졌다. 근본적으로 APEC의회원국들은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지역적 관세인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말레지아가 주도하였다. 말레지아는 APEC 지역블릭이아시아에 국한되어야 하며 APEC은 역내무역을 절대로 자유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自由脫退條項이 보고르선언에 의해 제안되었음에도 말레지아는 APEC에 계속 존속할 것이기 때문에 말레지아가 존재하는

²³⁾ Andrew A. Faye, op. cit., p.194.

²⁴⁾ WTO/GATT는 무역자유화에 대하여는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역촉진과 경제활성화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APEC의 가치와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자유무역지대(FTA)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을 예상케 하는 것이다.25) 일본으로 대표되는 두 번째 APEC회원국 그룹은 모든 경제영역에 대하여 APEC의 2010/2020계획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農業分野에 대하여는 예외를 허용받으려는 일본의 노력이 아시아·태평양地域에서의 자유무역개념에 대하여 완벽하게 상치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또한 자유무역지대(FTA)의 달성을 다소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농업분야를 APEC의 변수밖에 남겨 놓으려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여 미국은 個別的 行動計劃으로부터 농업과 같이 '민감한 분야'를 배제하려는 아시아국가들의 시도는 받아들여 질수 없다고 말하였다.26) 미국에 의해 대표되는 세 번째 범주의 APEC회원국들은 포괄적이지 않은 자유무역지대는 APEC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APEC회원국들은 농업과 관련하여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성을 단지 '原則'들 중의 하나로서만 인정하였으며 이로써 미국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논의에서 패배하였다.27)

따라서 APEC의 정치적 구성은 자유무역지대를 반대하는(anti-FTA) 말레지아와 같은 국가, 제한적 자유무역지대를 지지하는(pro-limited FTA) 일본과 같은 국가 그리고 전면적 자유무역지대를 지지하는(pro-full FTA) 미국과 같은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APEC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견해의 존재는 APEC이 內部指向的인 自由貿易地帶가 되는 것을 저해하고 TFBPA의 새로운 틀로 APEC을 이끌고 있다.

(2) 貿易促進과 經濟活性化

APEC은 무역촉진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광범위한 약속을 하였다. 貿易促進分野에 있어서 오사카 행동계획은 각 APEC회원국들이 각국의 정부조달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2000년까지 이 주제에 관하여 비구속적 원칙의 체계를

²⁵⁾ 무역자유화에 따르는 이익은 다수의 국가에게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나지만 이에 따른 손해는 소수의 생산자들에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세력은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어려운 반면에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세력은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동원하기 쉽다.; 정진영, 최혜국대우와 상호주의:상충적인가 보완적인가,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2호, 1997 여름호, 5면: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반대하는 APEC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다른 회원국들을 압도하게된다.

²⁶⁾ Andrew A. Faye, op. cit., p.195.

²⁷⁾ 이러한 의견의 충돌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채택하기로 약속하였다. 經濟活性化分野에 있어서 APEC은 임시적인 태평양 경제협력포럼(PBF)을 새로운 경제자문위원회로 전환하였다. 각료들은 또한 200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협력적 관세절차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로 동의하는 약속을 하였다.

APEC의 회원국들은 상이한 차원의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비록 모든 회원국들이 균형있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일부 회원국들이 일방적인 관세인하를 제시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美國은 농업보조금의 조기 삭감을 위한 입법을 약속하고 금융, 수출통제, 통신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선언하였으며 이들 중의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일본과 중국의 두 경제대국이 취한 최초의 행동계획도 무역자유화보다는 무역의 촉진과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日本은 좀더 효율적인 제조물특허기준과 농산물검역체계의 단순화를 약속하였으며 中國은 금지된 외국인 투자분야의 축소, 특정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의 철폐, 그리고 외국은행과 외국인회사의 지점설치 자유화 등을 약속하였다.

(3) 오사카 頂上會談以後의 APEC

오사카회담을 통해서 무역촉진과 경제활성화는 APEC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관세인하문제에 관하여는 포괄성의 문제로 인하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PEC 역할 또한 강화되었다. APEC의 역내시장은 독립된 실체로계속 존재할 것이며 이는 논의의 중심을 非關稅障壁과 전통적으로 순수하게國內規制로 간주되던 것으로 이전시키게 될 것이다. 무역촉진과 국내규제완화에 관한 관심은 APEC을 현재 GATT에서 상품의 교역을 넘어 확대하고 있는경제통합문제를 위한 선도적인 포럼이 되도록 할 것이다.28)

일부 평론가들은 '아시아的 接近方法'이 APEC내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는 APEC과 관련하여 구속력있는 합의사항이나 APEC을 설립하기위한 협정문,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 및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지적하는 것이다. APEC은 자체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개별국가의 체제이다. APEC의 독특한 성격은 APEC이 하나의 過程이며 구속력있는 협정이아니라 約束의 體系라는데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國內的이었던 問題들이 완

²⁸⁾ Andrew A. Faye, op. cit., p.198.

전히 자발적으로 國際的 次元에서 改正되고 있다.

'아시아的 接近方法'이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비록 APEC이 원칙의 체계에 의해 안내되는 행동지침의 메카니즘을 통해 일방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갔지만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지역적 차원에서의 진전은 지연되었다. 2010/2020년까지 자유무역을 실현한다는 보고르 선언의 달성을 위한 수단은 역내 관세인하가 아닐 것이다. 그 보다 APEC은 각 APEC 회원국들에 의하여 현재 지지되고 있는 GATT의무의 일방적 달성을 위한 통로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29)

APEC은 비공식적 활성화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경제활성화분야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다. 경제활성화활동은 세미나의 개최, 경제전망보고서작성, 경제 인명부의 편찬, 기술교환, 벤처캐피탈을 위한 환경평가, 중소기업네트워크의 개발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3. APEC 마닐라 實行計劃(MAPA)

1996년의 APEC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행동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발적 일방적 개별실천계획(IAP)을 바탕으로 마닐라實行計劃(MAPA)을 채택함으로써 97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인 일방적 自由化措置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이르렀다.

(1) 貿易 및 投資自由化

상품시장접근의 확대를 위하여 APEC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이상의 과감한 관세인하를 시도하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는 동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관세조치의 감축 및 철폐의지를 분명히하고 투명성제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작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사카 행동지침이 언급하고 있듯이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성취하기 위한자유롭고 개방적인 投資體制의 확립을 위해서는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의점진적 보장, 투명성 확보, 기술적 지원 및 협력을 통한 투자의 원활화 등에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마닐라 실행계획은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30)

²⁹⁾ Ibid., p.199.

³⁰⁾ 金尚謙 外, APEC 마닐라實行計劃(MAPA)의 分析과 評價, 1997, 11면.

(2) 企業活動의 經費節減

APEC회원국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무역관련기술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하여 域內企業의 費用節減을 모색하고 있다. 비용절감과 관련하여 자발적 일방적 개별실천계획에 포함된 조치에는 통관제도의 간소화, 국제표준과의 적합성제고를 위한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상용목적 출입국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APEC기업인 여행카드제도 도입추진, 조달절차의 투명성제고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3) 經濟 및 技術協力의 强化

APEC회원국들은 1992년부터 1996년 중에 경제 및 기술협력 13개 분야에서 320여개의 공동활동을 시행하였고 그 중 약 151개가 완료되었다.31) 특히 마닐라실행계획에서는 持續可能한 開發(sustainable development)을 APEC 의 중심적 목표로 선정하고 노동시장정보체계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교환과 훈련을 위한 APEC센터를 필리핀에 설립하였다. 마닐라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經濟協力體系에 대한 宣言은 APEC 경제협력과정에서업계와 여타 민간 및 지역기관들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구체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經營的 接近方式의 도입, 공동합의된 결과를 얻기 위해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주요분야의 선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APEC의 경제및 기술협력활동은 프로젝트의 수가 증가하고 관심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공동활동이 APEC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一貫性을 확보하고 회원국이 이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32)

IV. WTO體制內에서 APEC의 地位

1. APEC의 GATT規範 一致性

세계적 측면에서 APEC의 役割을 評價하는 경우 그 첫 번째 임무는 1947 년 GATT협정과 1994년 GATT협정의 규정을 APEC이 준수하고 있는가 하 는 것이다. APEC은 지역무역블럭을 평가하는 GATT 1947 제24조의 범위

³¹⁾ 완료된 공동활동이 주로 행해진 분야는 에너지 38개, 인력자원개발 34개, 산업과학과 기술 19개, 통신 11개, 중소기업 10개 분야이다.; 金尚謙 外, 앞의 책, 15면.

³²⁾ 金尙謙 外, 앞의 책, 15~16면.

밖의 기구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APEC이 동 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전향적인 정책의 이행을 위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회원국들은 技術障壁에 관한協定(TBT Agreement)과 같은 새로운 협정 뿐만 아니라 GATT 1947의 제1조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33)

(1) APEC과 GATT 地域條項

제한된 상황하에서 지역적 무역블럭에 대하여 관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GATT 제24조는 세 가지의 관심사항에 의하여 立法의 動機가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일부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은 지역기구에 대한 일정한 인정을 필요로 했다. 둘째, 특정 지역에서의 완전한 통합은 GATT하에서 하나의 실체로보증되는 準國家的 地位를 부여할 정도에 이르렀다. 세째, 좀더 규모가 작고유연한 블록은 자유무역을 위한 보충적 방법을 제공한다. 제24조의 상세한내용은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최소한 표면적으로 제24조는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상에 관한 모든 關稅와 다른 制限的 規制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제24조는 또한 관세동맹이 관세동맹의 비회원국에게 부과하는 장벽이 전체적으로 관세동맹을 형성하기 이전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이 自由貿易地帶에가입한 후에 비회원국에 대한 장벽을 강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지역기구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한 지역기구는 WTO 회원국인 지역기구의 비회원국가에 대해 최혜국대우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34)

제24조의 이러한 규정들은 WTO가 地域機構들을 심사하는 수단이다. 얼핏보기에 APEC은 제24조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무엇보다도 우선 APEC의 개별 회원국들은 관세인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APEC이 달성한 이득을 비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 비록 미국과현자그룹은 APEC이 GATT 제24조의 적용을 받는 기구로 진행되어 가기를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APEC은 제24조에 의한 지역적 무역블럭의 형성을 지향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APEC이 미국이나 현자그룹의 계획에 따른 발전을 해 왔다면, 開放的 地域主義는 비회원국에 대한 조건부 최혜국대우의 부여라든가 開途國에 대한 선택적

³³⁾ Andrew A. Faye, op. cit., p.201.

³⁴⁾ GATT 제24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崔哲榮, 世界貿易機構(WTO)와 GATT 제24조, 統一問題와 國際關係 제8집, 1997, 393면 이하 참조.

우대의 요구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이다.35)

(2) APEC과 GATT 最惠國待遇條項

1) 제1조와 貿易自由化

제24조의 예외는 APEC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별 APEC회원국들은 GATT 1947과 GATT 1994의 나머지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GATT 1947의 제1조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商品의 自由移動을 방해하는 관세와 세금 및 수수료 그리고 모든 규칙과 형식에 대하여 최혜국대우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6) 따라서 만약 APEC을 통해서 어떤 WTO 회원국이 자신의 GATT 關稅引下義務를 앞당긴 경우 그 결과 낮춰진 관세는 APEC 회원국들과 WTO의 회원국인 APEC의 비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WTO 회원국의 GATT상의 權利를 無效化및 損傷(nullification and impairment)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혜국대우원칙(MFN)과 함께 GATT 규범의 핵심적 원칙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상호주의(Reciprocity)에 의한 보복조치가 따르게 된다.37) APEC회원국들이 최혜국대우를 APEC의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제1조의 준수는 APEC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를 노정하고 있지 않다.

2) 제1조와 貿易促進

제1조 본문에 있어서 APEC과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貿易促進措置와 관련되어 있다. APEC에 의하여 채택된 무역촉진조치들은 '모든 원칙과 형식'의 문구에 해당될 것이며 제1조의 요건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APEC의 회원국들이 일방적으로 단순화된 관세절차를 제의하거나 각 회원국들에 의하여 준수되어지는 통일적인 절차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 개별 회원국 또는

³⁵⁾ Andrew A. Faye, op. cit., p.202.

^{36) &}quot;어떤 한 체약국이 타국의 원산품이나 타국으로 향하는 어떠한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편의, 호의, 특전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체약국으로부터 산출되거나 그 영토로 향하는 모든 동종 상품들에 대하여서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GATT 1947 제1조제1항.

³⁷⁾ 相互主義原則은 GATT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하나는 우호적 상호주의 (good for good)이고 다른 하나는 보복적 상호주의(bad for bad)이다. GATT체제에서 최혜국대우원칙과 상호주의는 서로 相互補完的 機能을 하고 있다.;정진영, 앞의 논문, 11면~12면.

APEC은 일반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하여 더욱 복잡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제1조의 제한으로 인하여 회원국들은 비회원국들이 동일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조건부로 비회원국에 대해 合理化된 節次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조는 제24조에 의한 무역지대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에게 무역촉진조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3) GATT 1994와 貿易促進

정해진 기준의 형태로서 무역촉진은 APEC이 어떻게 GATT 1994의 요건에 대응할 것인가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물과 안전기준의 영역에 있어서 무역촉진의 문제는 한 국가의 基準이면서 국내로 수입되는 상품이 당해기준에 일치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의 평가방법이고 동시에 자국이 수용할 외국에 의해 이행된 基準遵守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38)

APEC이 특정한 물품에 대한 조화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1994년의 무역에 대한 技術障壁協定이 적용될 것이다. 이 협정의 제2조는 모든 수입물품이 그 原産地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술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APEC이 조화된 규범을 채택하는 경우, 예컨대 일본은 APEC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상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APEC 회원국의 상품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된다. 기술장 벽협정은 동일한 규칙을 國內的 評價節次에도 적용한다. 특정한 기준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이행된 절차는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해 평등하게 적용되어져야한다. 따라서 APEC 회원국들은 그들이 적용하는 규범의 형태나 규범의 적용방법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못한다.

다른 국가에서 이행된 테스트의 一致性受用이라는 기술장벽협정의 마지막 규율부분은 APEC과 같은 지역기구의 회원국들이 최혜국대우원칙의 기초위에서 행동하여야함을 보여준다. 이 협정은 당해 국가가 적용가능한 규제와 기준에 일치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만족하고 있는 경우 각국이 WTO 회원국의 일치성평가절차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평가절차로부터의 결과에 대하여 相互認定하는 協定을 논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최혜국대우가 이 영역에 있어 규정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TO의 회원국은 제조물 및 안전기준에 일치

³⁸⁾ Andrew A. Faye, op. cit., p.203.

함을 보증하는 것으로 수용되고 신뢰되는 다른 국가의 절차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APEC의 모든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절차를 수용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이 규정은 APEC 회원국들이 APEC 비회원국들의 테스트절차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아직까지 APEC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GATT 협정 제1조의 일반적 適用可能性과 관련하여 이 규정을 이해하면 APEC 회원국들은 APEC 회원국과 동일한 절차를채택하고 있는 비회원국의 테스트절차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APEC과 GATT 1994 협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4) 透明性과 報告

APEC은 회원국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 통관, 실행관세율, 무역현황 및 추세에 관한 정보 및 관련내용의 데이터베이스를 매년 최신화하고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APEC의 데이타베이스작업에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9) 또한 WTO協定의 義務를 이행하기 위하여 APEC회원국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일부를 WTO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기술장벽협정은 APEC이 관심을 가져야할 규정의 유형의 예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규정에서 기술장벽협정은 한 국가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준 및 평가절차를, 특히 그 기준과 절차가 國際的 規範과 다를 경우, 세계 각국에 통지함으로써 투명성확보를 요구한다. 40) APEC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진 진보는 모든 WTO 회원국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할 의무뿐만 아니라 WTO에 이루어진 地域的 發展을 통보해야 할 의무도 발생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41)

2. WTO와 APEC의 貿易自由化

APEC과 APEC의 회원국들은 반복해서 多者間貿易의 深化라는 약속을 해

³⁹⁾ 金尚謙 外, APEC 마닐라 實行計劃(MAPA)의 分析과 評價,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7, 10면.

⁴⁰⁾ 기술장벽협정 제2.9조, 제5.6조

⁴¹⁾ GATT 1947 제24조제7항; 동 조항은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그리고 이를 위한 잠 정협정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동 조항의 목적이 당해 지역체 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방적'지역주의를 추구하는 APEC에게 적용이 있다.

왔다. 보고르선언, 오사카선언, 오사카행동계획 그리고 마닐라실행계획(MAPA)은 세계경제에 대한 APEC의 기여와 다자간 무역에 대한 일반적 지지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이들 문서는 APEC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되어야한다는 현자그룹의 비젼을 APEC이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이 세계 각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면 무역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면서 왜 또 다른 지역블럭을 창설하여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퇴보시키는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무역촉진조치가 초기단계의 WTO에 가장 적절한 것인가? 다자간의 진보와 병행하여 발생하는 지역적 발전의 비젼은 TFBPA가 다자간 체제의 목적과 일치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42)

우루과이라운드의 종료와 함께 多者間 自由貿易을 향한 움직임은 획기적 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WTO는 그 전세계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초기적 단계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APEC이 과거에 지역블럭이 아니었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고 역내관세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초점이 WTO의 틀내에서 협상가능한 기구에서 벗어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WTO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APEC 지향적인 반응은 開放的 地域主義의 개념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APEC의 무역촉진조치가 비회원국에게 폐쇄적으로 적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다는 개념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다. 그대신에 GATT/WTO의 요건준수를 통하여 모든 WTO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1) 小規模 協商當事者

小規模의 協商은 지역기구의 첫 번째 장점일 것이다. WTO처럼 전세계적인 협상당사자를 갖는 경우보다 10여개 국가가 협상당사국인 경우 무역장벽의 완화를 위한 합의의 달성이 더욱 용이하다. 보다 적은 수의 협상당사국은 상 대국가의 동기를 파악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誤算에 의한 잠재적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데도 용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APEC은 무역촉진과 경제활 성화를 강조하는 듯하다. 開途國이나 先進國은 WTO의 모든 회원국에게 자국 의 시장을 개방하기보다 소수의 당사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선택할 이유를 가

⁴²⁾ Andrew A. Faye, op. cit., p.205.

지고 있다.43) 단지 10여개의 경쟁자들을 어떤 산업시장에 참가시키는 것이 116개의 새로운 경쟁자들을 참가시키는 것보다 국내의 기업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APEC과 같은 그룹이 어떠한 진전을 달성한 경우 이는 최혜국대우 요건에 의해 모든 WTO 회원국들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고해도 합리적인 시간내에 어떻게 비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를 제공할 것인가를 해결하기전에 地域的 體制內에서 안전기준과 같은 프로젝트의 세세한 기준을 처음 만들어내고 이를 소수 당사국간에 시행하는 것은 이미 기준을 마련한 국가에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문제는 개도국들과 협상을 시작하는 선진국들과 특히 관련이 있다. 많은 개도국과 신흥공업국가들은 자국의 幼稚産業을 높은 關稅와 非關稅障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기술국가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작은 규모에서 나오는 지역기구의 유연성은 협상의 당사국들을 좀더 쉽게 국제경쟁의 무대에 끌어들임을 허용함으로써 이 곤란한 문제의 개방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아직까지그 구체적인 구조가 제시되지 않은 2010/2020년까지의 완전한 무역자유화를위한 APEC의 계획과 같은 제안은 WTO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 규모가 작다는 것은 작업의 속도를 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참여의 의미를 증대시키며44)부상하는 市場의 開放을 확대시켜준다.

소규모 협상에는 장점 뿐만 아니라 短點도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소규모 당사자는 협상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APEC내에미국과 일본의 존재는 그러한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많은 문제에 있어 의견이 상호대립되고 있는 이 두 주요 국가가 대규모 그룹에서 벗어나서소규모그룹으로 옮겨간다면 대규모 그룹의 의견차이는 이들 두 국가가 옮겨간소규모그룹의 의견차이보다 적을 것이다. 예컨대 무역자유화를 위한 일방적노력에 農業部門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인가와 같은 APEC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1996년 紛爭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

^{43) 80}년대 이후 새로이 부활되고 있는 지역주의추세는 GATT의 규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무역차별효과를 줄이기 위해 GATT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일정한 형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역경제협력체들은 GATT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정진영, 앞의 논문, 17면~18면.

⁴⁴⁾ APEC에 있어서 구성국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WTO에서는 별 발언권이 없는 말레지아가 APEC내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은 그 예이다.

다.45)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들 두 완고한 국가들은 소규모의 그룹내에서이건 대규모의 그룹 내에서이건 協商을 脫退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소규모의 협상그룹은 협상당사자의 감소와 同質性의 增加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 협상을 쉽게 만들어 준다. 舊 동구권국가들에게 개방하기 이전에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상대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규모그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차이가현격한 APEC은 현재의 APEC과 장래에 도달해야할 APEC에 관한 믿음에 있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협상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理論的 意味에서 다자간협상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있는 동일한 두 국가가 지역적 협상에서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둘째, 實質的 意味에서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에 도달해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적 무역블럭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때문에 지역적 그룹화의 이익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2) 조화된 一方主義와 最惠國待遇의 要求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하여 APEC이 제공하여야 하는 혜택은 GATT 1947의 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다. APEC에서 이루어진모든 진전은 WTO의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의 기초위에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적 그룹화는 전향적인 무역정책을 위한 실행장소가 되고 있다. APEC과 같은 기구가 발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자신들의 GATT의무를 조속히 달성한다는데 동의함으로써 APEC회원국들은 또한 APEC이 WTO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다는 확신을 지원하고 있다. GATT의 義務履行을 촉진하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APEC의 회원국이 아닌 WTO 회원국들은 이러한 정책의 가장 커다란 지지자일 것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상호성없이 인도네시아의 낮은 관세율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46)

⁴⁵⁾ Andrew A. Faye, op. cit., p.207.

⁴⁶⁾ EU의 관세율이 인도네시아의 인하된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소위 無賃乘車問題가 발생한다. 이는 관세율이 한 국가의 무역과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역상대방 국가의 무역과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協商關稅(negoti-

일방적 조치의 다른 혜택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역적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투자가치의 증대에 있다. 선진국과의 밀접한 관계형성 뿐만 아니라 非拘束的 投資規範의 채택과 같은 開途國側의 조치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며 개도국의 발전에 필요한 외자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규모그룹은 협상에 있어 훨씬 용이하다. 다자간의 협상에서 투자를 위한 협상원칙은 난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APEC과 같은 기구에서는 통일적인 규제, 경쟁, 산업 및 투자정책과 규범에 대한 약속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WTO와 GATT에서 달성하지 못한 投資 및 競爭法에 관한 協定의 완성이라는 높은 목표의 달성은 다자간의 차원에서보다 지역적 차원에서 더욱 달성하기 용이하다. 투자규범 및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다시 멕시코가 NAFTA에 의하여 자신의 투자의무에 관하여 행한 것처럼 비회원국들에 대한 양보의 폭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국에 투자하려고 모색하고 있는 비회원국의 投資者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며 이는 자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동일한 정책을 비회원국들에게 도입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3) 多者間 貿易의 段階的 强化

TFBPA의 마지막 혜택은 지역적 발전으로 귀결되는 다자간 무역의 단계적 강화에 초점이 놓여져 있다. 地域的 貿易協定의 價值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직접적 효과이다. APEC 회원국들이 해결되지 않은 다자간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다루는 경우 비회원국들은 지역적 국내적 정책을 일방적 또는 다자간의 체제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47) 두 번째는 간접적 효과이다. 뒤에 쳐져 남게된다는 두려움은 다른 당사자들과 지역기구들을 협상에 참여하도록 만들 것이다. APEC에 있어서도 종종 뒤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APEC 무역협상의주요 동인이 되어왔으며 일부 평론가들은 NAFTA를 APEC이 발전하는 동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APEC은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이를 WTO에 가져와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개방적 지역협상의 혜택은 안전한 공간에서

able tariff)의 개념이 등장하여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정진영, 앞의 논문, 9면.

⁴⁷⁾ Andrew A. Faye, op. cit., p.209.

논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를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非會員國에게 移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APEC이 합의에 도달하고 협정문에 서명한 후 그 혜택을 최혜국대우 원칙을 통해서 모든 WTO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無條件的 最惠國待遇의 履行이다. 두 번째는 APEC이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을 일시 정지하고 WTO에 APEC의 합의사항과 이행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APEC이 이들 새로운 정책을 입법화하기 전에 APEC의 회원국이 아닌 다른 WTO 회원국에게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條件附 最惠國待遇를 요구하는 것이다. 48) 만약 APEC이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 협정은 WTO에 의해 채택되는 어떤 것보다도 자유롭거나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며 WTO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APEC과 같이 선도적인 그룹으로부터는 어떠한 危害도 발생하지 않는다. WTO는 단지 따르거나 방관하거나 무역자유화 및 촉진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49)

3. WTO를 위한 提言

많은 학자들이 APEC을 EU나 NAFTA의 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PEC을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交易創出效果와 交易轉換效果에 대한 정태적(static)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50) WTO는 무역자유화와 촉진에 있어서 지역그룹에 대응한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분석의 주된 초점은 무역블럭내에 있어서 WTO회원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關稅의 引下에 놓여있다.

(1) TFBPA의 認定

WTO는 TFBPA를 인정하고 다자간 체제에서 하는 역할을 인정하여야 한다. WTO는 관세인하에 대한 협상과 다른 진보적인 무역촉진조치에 대한 자신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APEC과 같은 기구는 효과적

⁴⁸⁾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와 조건부 최혜국대우원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정진영, 앞의 논문, 3면~5면.

⁴⁹⁾ Andrew A. Faye, op. cit., p.210.

⁵⁰⁾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교역창출(trade creation)의 利益과 교역전환(trade diversion)의 損失이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으며 교역전환효과가 교역창출효과 보다 크면 지역경제통합의 형성이 국민의 厚生(welfare)을 감소시킨다.;崔哲榮, 앞의 논문, 410면~412면.

인 시도이지만 반드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具體的 手段이 있어야 한다. 이 목적은 WTO 차원에서의 진보적인 조치를 반복하는 것이거나 GATT의 최혜국대우조항을 실행하여 모든 WTO회원국들에 의해 진보가 느껴질 수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GATT의 제24조를 改正하여 自由貿易地帶를 禁止하고 관세동 맹의 시작 이전의 관세보다 높지 않은 관세를 역외국가에게 적용하는 關稅同盟 만을 許容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51) 지역주의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논 의는 WTO가 자유무역지대를 대신할 건전한 기구로서 이러한 형태의 지역주의를 원하는가하는 점에서 APEC과 관련이 있다. TFBPA는 관세문제를 WTO에 남기는 한편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바람직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TFBPA의 매력은 자유무역지대를 일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GATT 제24조는 APEC과 같은 TFBPA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2) 最惠國待遇要件의 遵守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를 논함에 있어 지역적 기구에 대응한 WTO의 주된 優先權은 무역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구로서 WTO의 지위를 확립하고 GATT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있다. 지역적 기구를 규율하는 GATT 제24조는 TFBP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PEC 문제는 TBT와 같은 특별한 새로운 協定 뿐만 아니라 제1조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한다. WTO 이외의 협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전을 포용하기 위해서 WTO는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모든 規則과 形式을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TFBPA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WTO는 TFBPA에 존재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PEC의 조화된 일방주의에 의한 제3당사자에 대한 혜택은 상실될 것이다. WTO는 이들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TO는 진보적인 노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단계적 강화이론에 따라 WTO는 무역자유화와 촉진의 求心點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즉 WTO는 회원 국들이 APEC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지역적 일방적 접근의 이익을 아무런 노

⁵¹⁾ Jagdish Bhagwati, The World Trading System at Risk, 1991, p.65; Jaime De Melo & Arving Panagariya, The New Regionalism in Trade Policy, 1992, pp.9~11.

력없이 차지하는 無賃乘車者(free rider)로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52) 무엇보다도 APEC 회원국들이 신속한 속도로 자신들의 관세를 인하할때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했던 바에 따라 WTO 회원국들이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 WTO는 무역자유화의 최선봉이라는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APEC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납득시켜야 한다.

(3) WTO에 대한 通知

技術貿易障壁協定은 제3자 권고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투명성의 보장을 위하여 기술장벽협정은 WTO 회원국들에게 제품기준과 평가절차를 공표하도록 하고 자국의 제품기준이 國際基準에 근거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3) 이러한 요구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확대되어 질 수 있다.

TFBPA를 위한 두 가지 정당화근거는 TFBPA가 현재까지 범세계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분야에 있어 진전을 이룰 것이며 최혜국대우요건을 통해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 혜택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어떻게 큰 규모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가하는 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성과를 진작하기 위해 WTO는 기준문제와 관련하여 엄격한 투명성의 준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APEC과 같은 기구에 의하여 그리고 그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달성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通知要件의 適用을 확대하고 있다.54) 예컨대 세관절차, 투자규범 그리고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에 관한 모범법안은 WTO 사무총장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WTO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제24조의 요건을 바탕으로하여 APEC과 같은 기구가 성취한 貿易自由化過程에 관한 정기적인 通知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WTO 회원국이 APEC에서 진행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를 모방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⁵²⁾ 무임승차의 문제는 GATT 제1조에 의한 無條件的 最惠國待遇原則의 本質的 性格에 의한 것이지만 경제이론적 측면에서 무임승차하는 국가의 보호무역은 자국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켜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貿易自由化를 저해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相互主義的 接近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정진영, 앞의 논문, 5면~6면.

⁵³⁾ TBT협정 제2.9조, 제2.11조

⁵⁴⁾ Andrew A. Faye, op. cit., p.214.

보장하게 될 것이다. APEC에서 착수된 문제의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것은 회원국들이 최혜국대우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다른 WTO 회원국들이 APEC 회원국들의 국내정책을 답습할 수 있도록 해주고 WTO가 統制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通告 및 登錄要件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WTO는 정보의 집합 교류장소가 되어야 하며 APEC과 같은 기구가 조직한 세미나와 프로그램의 형태, 네트워크그룹 등에 관한 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APEC을 하나의 새로운시도로 보고있다면 WTO는 그러한 시도를 관찰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얻어진 교훈을 다른 지역과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新規 會員國의 問題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는 새로운 會員國의 가입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역기구들이 진정한 다자간의 자유무역을 위한 구조물이라면 이들 기구는 폐쇄적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제24조는 새로이 가입을 원하는 국가가 일정한 客觀的 基準을 충족함으로써 지역블럭에 가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가입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폐쇄적인 무역블럭을 향한 이러한 제안은 TFBPA에 대하여는 적용가능성이 낮더라도 결국에는 필요하게될 것이다. 만약 WTO가 APEC 非會員國들에 대한 최혜국대우요구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킨다면 가입문제는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APEC이 최혜국대우조항을 우회하는 길을 찾게 된다면 APEC과 같은 새로운형태의 지역적 기구에 대한 加入條件緩和問題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최소한 현재에 있어서 가입조건의 완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소규모의 협상이 다른 달성하기 어려운 무역촉진 정책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요건의 완화를 강요하는 것은 TFBPA가 소규모당사자협상의 혜택을 극대화하는데 방해가 된다.55)

V. APEC의 向後展望

1989년의 시작이래 APEC은 무역자유화, 무역촉진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조화된 一方主義에 초점을 둔 대외지향적 지역블럭으로 발전해 왔다.

⁵⁵⁾ Ibid.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내관세인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은 APEC을 GATT 1947의 제24조와의 마찰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적 그룹의 형태인 TFBPA를 대표하는 APEC은 소규모의 협상, 혜택의 공유, 상호노력의 단계적 강화라는 지역적 정치경제관계의 세 가지 혜택에 근거한 交易創出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또한 APEC은 선후진국간의 대립을 완화하는 협력을 이끌어내며 자유무역을 향한 진전에 있어 주요 선진국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APEC과 같은 TFBP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WTO가 첫째, APEC과 같은 기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하며 둘째, 무역촉진을 통해 이루어진모든 진전에 대하여 최혜국대우원칙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세째, 감독자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명확하고 간소한 통지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네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그룹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GATT 1994協定의 批准과 WTO의 존재는 APEC회원국들에게 자유무역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켰거나 최소한 감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적절하게 개발되기만 한다면 APEC으로 대표되는 향후의 새로운 地域主義는 다자간의 자유무역을 달성하는 과정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이다.